

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
- 나. 난지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 및 침출수를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변지역 오염 및 가스안전사고 예방하여 난지도 매립지에 조성된 월드컵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(재계약)을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2호

○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

-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은 2002년부터 3년주기로 6차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위탁운영 하였음.
-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의 유일한 수요처로 수탁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없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.
- 제6차 위탁시 공개모집하였으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중앙지사만 단독입찰하여 2회 유찰되었는 바, 한국지역난방공사외 위탁 업체가 없음.
- 따라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을 매립가스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운영 경험이 많은 한국 지역난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 사무의 범위

- 매립가스 포집·이송·정제·소각 등 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, 개량
- 매립가스포집공·관로 등의 유량, 온도, 압력, 매립가스 성상과 매립가스 표면발산, 감지정의 모니터링
-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된 공사의 시행, 물품의 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
- 기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번지 일대
- 운영일자 : 2002.02.01.~ 현재
- 시설규모
 - 쓰레기매립량 : 91,972천 m^3 , 매립면적 : 2.720천 m^2
 - 포집공 106공, 가스이송관로 14km, 송풍기, 정제기, 소각기 등

○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 (2020.2.1. ~ 2023.1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892백만원('20년)

○ 산출근거

- 비정산비(인건비등) 742백만원, 정산비(시설유지보수비) 150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의 동의 및 보고) 제1항

○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
제3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9.30>

2. 서울특별시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
4.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 실적이 있는 자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7.30, 2012.12.31, 2014.5.14>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3.18, 2009.7.30, 2014.5.14>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